

재외선거 안내문 <제16호>

 중앙선거관리위원회

제공일자 2011. 5. 18.

☎ 82-2-503-0648
FAX 82-2-507-4352

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신문·인쇄물 등을 이용한 광고·선전 행위

허용되는 행위

- 정당의 대표자, 입후보예정자 등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재외 국민에게 전화, e-mail, 연하장 등을 통하여 의례적인 인사를 하는 행위

금지되는 행위

- 신문·방송·잡지 그 밖의 간행물에 기념일 등을 빌미로 국회의원, 입후보예정자의 사진·정견·경력 등을 광고하는 행위 (선거법 §93, §254 위반)
- 한인회 주최 각종행사의 진행과정에 의도적으로 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 예정자를 선전하거나 초청장·안내장·팸플릿 등을 이용하여 입후보 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 (선거법 §93, §254 위반)
-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홍보하는 벽보나 유인물을 재외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교민회 사무실, 교회, 학교 등에 게시하는 행위 (선거법 §93, §254 위반)
-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한인회 회원이나 소속 당원 모두에게 연하장을 발송하거나 연하장에 본인사진·가족사진·활동상황·경력 등을 게재하는 행위 (선거법 §93, §254 위반)

 재외선거에 대한 자료는 [재외선거 홈페이지\(http://ok.nec.go.kr\)](http://ok.nec.go.kr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!

안내자료 : 공관 재외선거담당자 교육 실시 1부.

공관 재외선거담당자 교육 실시



【 교육개요 】

1. 목 적

- 공관 재외선거 실무 전담인력 조기 선정·교육으로 전문성 제고
-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전과정 실습교육으로 실무능력 함양
- 재외선거제도 및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·단속에 관한 교육 병행

2. 시기 및 장소

- 시 기 : 5. 16(월) ~ 5. 20(금) [2개반, 반별 2박 3일]
- 장 소 : 선거연수원

3. 대 상 : 재외선거담당 영사 106명(재외선거관 미파견 공관별 1명)

4. 주요내용

- 재외선거관리 실무 전반에 관한 사항
- 모의선거 실시 세부절차 및 분야별 업무처리 요령
- 재외선거정보시스템 설치·운영 요령(실습)
- 재외투표소 설치·운영 및 재외투표 회송요령(실습)
- 재외선거 계도·홍보 및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·단속 교육 등